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286

발의연월일: 2025. 2. 19.

발 의 자:정동만・이인선・김태호

김기현 • 박충권 • 최은석

김선교 · 김성원 · 엄태영

박성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동일 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발생함 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힘으로써 자치경찰사무 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 간 처우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 중 "공무원에게"를 "공무원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5조(예산) ① (생 략)	제35조(예산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시·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	②		
담당 <u>공무원에게</u> 조례에서 정	<u>공</u> 무원 등 자치경찰사무를		
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	수행하는 사람에게		
지원 등을 할 수 있다.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